KOSHA GUIDE

C - 79 - 2015

- (3)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시 피난안전구역 설치, 피난시설, 피난유도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4) 화장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근로자의 보건위생 관련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때, 자체적인 화장실 정화조 설치 및 가설용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5.6 낙하방지·방호계획

- (1) 공사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낙하위험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, 안전대책을 포함한 낙하방지 및 방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(가) 낙하위험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는 공사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낙하물 시나리오 작성, 낙하 시뮬레이션 검토, 낙하 위험범위 설정 등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- (나) 공사 단계별 최소한의 낙하 위험범위는 <표 1>을 참조하되, 데크플레이트, 커튼월 등 바람을 받는 면적이 큰 판상형 자재는 고도별 풍속의 영향이 크므로 판상형 자재 낙하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낙하물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실시하여 낙하 위험범위를 설정한다.

<표 1> 공사단계별 최소 낙하위험범위

건축물 높이 h	낙하위험 반경	최소 낙하위험 반경
h ≤ 100m	h/5	12.5m
$100m < h \le 150m$	h/6	20m
$150m < h \le 200m$	h/7	25m
200m < h	h/8	30m

(다) 낙하물 발생 시나리오는 초고층공사 구조물 형상, 공법특성, 낙하물의 특성, 인접건물 및 도로 현황, 부지 형상, 바람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다.